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고단55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점유이탈물횡령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위

판 결

사건 2013고단5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점유이

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 4. 1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근무하던 봉제공장 인근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D(여, 22세)이 전화를 받게 되자 "한번하자, 맛있겠다. 너의보지에 나의 자지를 넣고 싶다. 섹스 한번 해주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2. 09:3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9. 04: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30-1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

해자 소유 농협 현금 IC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고소장
-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음성파일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피고인은 2001. 1.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순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